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568호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8월 10일
-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2. 제안이유

- 2021. 5. 18.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마련할 때 체육 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 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음.

또한 감염병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 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음.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의무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2021. 5. 18.>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35조 (보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 먼저 **안 제2조(정의)**에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 **안 제4조(책무)**에서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 연령 등 특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 및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민간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체육시설별 제한조치가 각기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스키장, 골프장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제한조치를 두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연령별 조건부 운영¹⁾을 허용하고, 이와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등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또한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은 20종으로 한정되어 있어²⁾, ‘자유업’으로 등록된 요가, 필라테스, 축구교실 등 체육시설들은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이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8조(지원)**에서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도장업(태권도, 합기도, 검도, 권투 등)에서 아동·학생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고,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과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허용하지 않음.

2)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체육시설 등의 손실이 막대한 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법」 상 20종의 체육시설업과 요가, 필라테스, 축구교실 등과 같은 자유업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및 가상의 운동 체험시설(스크린 스포츠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한정을 두도록 수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체육시설법」 제35조(보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재정지원 뿐 만 아니라 필요한 행정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제18조 조제목을 ‘재정지원’에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수정제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재정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18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시장에게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체육시설 등의 손실이 막대한 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이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의안번호
256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정진술 의원	2021. 8. 1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원활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시 필요한 지원사항 규정함(안 제18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8. 10. 정진술 의원 발의 ※(찬성) 김기대,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양민규, 임종국,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19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1. 5. 18. 시행)」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건으로 조례 제정 필요 ○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재정적으로 한정 필요 				
	구 분	원 안	수정안		
제18조 (재정 지원)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중략>~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팀장	김은영(☎2133-2732)	담당	황선민(☎ 2733)